|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35호  ‘팡관푸’(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을 심화하고 세수 상업환경을 진일보 최적화하며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관리방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발표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부속문건: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정보보고서  국가세무총국  2019년 10월 14일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세수협정’)과 국제운송협정 세수조항을 집행하고,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관리를 규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이하 ‘국내세수법률규정’으로 통칭)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경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한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향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향유할 때는 ‘자체적 판단, 향유 신고, 관련 자료 보존 비치’ 방식으로 처리한다. 비주민납세자가 자체적으로 협정대우 향유조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할 경우, 납세 신고 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원천징수 신고 시, 스스로 협정대우를 향유할 수 있고, 동시에 본 방법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비치하며, 세무기관의 후속관리를 받는다.  **제4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비주민납세자란, 세수협정 주민조항 규정에 따라 체약 상대국 세수주민인 납세자를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협정은 세수협정과 국제운송협정을 포함한다. 국제운송협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체결한 항공협정, 해운협정, 도로운송협정, 자동차운송협정, 국제운송 수입에 대한 세수협의 혹은 또는 교환문서 및 기타 국제운송에 관한 협정을 포함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협정대우란, 국내 세수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를 협정에 따라 경감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국내 세수법률 규정에 따라 비주민납세자의 중국 경내 원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단위 또는 개인을 가리키며, 법정 원천징수의무자와 기업소득세법에 규정된 지정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주관세무기관이란, 국내 세수법률 규정에 따라 비주민납세자가 중국에서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하여 징수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세무기관을 가리킨다.  **제2장 협정 적용과 납세신고**  **제5조** 비주민납세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스스로 협정대우 향유조건에 부합하고 협정대우 향유가 필요할 경우, 신고 시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정보보고서>(첨부 참조)를 제출하고 본 방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원천징수 및 지정 원천징수 상황에서 비주민납세자가 스스로 협정대우 향유조건에 부합하고 협정대우 향유가 필요할 경우, 사실대로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정보보고서>를 기입하여 주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본 방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비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정보보고서>를 받은 후, 비주민납세자가 기입한 정보가 완전한지 확인하여 국내 세수법률 규정과 협정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하고, 사실대로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정보보고서>를 원천징수 신고의 부속보고서로써 주관세무기관에게 제출한다.  비주민납세자가 주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정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입된 내용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 세수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한다.  **제7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보존 비치하는 자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7.1 협정 체약상대국 세무주관당국이 발급한 비주민납세자가 취득한 소득의 당해연도 혹은 직전연도 세수주민 신분임을 증명하는 세수주민 신분증명서; 세수협정 국제운송조항 또는 국제운송 협정대우를 향유할 경우, 협정 규정에 부합하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문건으로 세수주민 신분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7.2 관련 소득 취득과 유관 계약서, 협의서, 동사회 또는 주주회 결의서, 지급 증빙 등 권리귀속 증명자료  7.3 배당금, 이자, 특허권사용료 조항 협정대우를 향유할 경우, ‘수익소유자’ 신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7.4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 향유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제8조** 비주민납세자는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정보보고서>에 기입한 정보와 보존 비치하는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합법성에 대해 법률책임을 진다.  **제9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정대우 혜택을 받아 세금을 과소납부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스스로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향유할 수 있었으나 향유하지 않고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규정기한 내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주관세무기관에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동시에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비주민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과다납부 세금 환급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실 확인을 거쳐 협정대우 향유조건에 부합하는 과다납부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향유하기 위해 보존 비치하는 자료는 세수징수관리법 및 실시조례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기관의 후속관리**  **제12조** 각급 세무기관은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에 대한 후속관리를 전개하고, 협정을 정확히 집행하며, 협정남용 및 탈세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13조** 주관세무기관이 후속관리 시, 비주민납세자에게 기한 내 보존 비치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주관세무기관은 후속관리 또는 세금환급에 대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자료에 근거하여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 향유조건에 부합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거나 비주민납세자에게 탈세혐의가 존재함을 발견할 경우, 비주민납세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한 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본 방법에 규정된 자료 원본이 외국어이고, 주관세무기관 요구에 따라 제공할 시 중문 번역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중문 번역문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비주민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주관세무기관에 자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사본에 원본의 보관장소를 표시하고, 보고서 책임자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한다. 주관세무세무기관에서 원본 검사를 요구할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주민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관세무기관이 진행하는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의 후속관리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비주민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세무기관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세무기관이 진행하는 후속조사를 회피, 거절 또는 방해하여, 주관세무기관이 협정대우 향유조건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협정대우 향유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 향유조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협정대우 향유하고 세금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본 방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주민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 하지 않은 걸로 간주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비주민납세자에게 납세지연 책임을 추궁한다. 원천징수 상황에서 세금 지연납부기한은 원천징수 신고 협정대우 향유일부터 계산한다.  **제17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본 방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본 방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협정대우 향유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향유하고 세금을 미납 혹은 과소납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관세무기관이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비주민납세자에게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제18조** 기업소득세법 제39조 규정에 의거하여 비주민납세자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해당 비주민납세자의 중국 경내 기타수입항목에서 지급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해당 비주민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제19조** 주관세무기관은 후속관리 또는 세금환급에 대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상급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호협상 또는 정보교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제20조** 본 방법 제10조에서 서술한 조사시간에 비주민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추가 자료 제출, 특정 요청 사안, 상호 협상, 정보교환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기관은 상술한 원인으로 조사시간이 연장될 경우, 세금환급 신청인에게 관련 결정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주관세무기관은 후속관리 과정 중, 세수협정 주요목적 테스트 조항 또는 국내 세수법률 규정상 일반적 조세회피(탈세) 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일반적 조세회피(탈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주관세무기관은 비주민납세자가 부당하게 협정대우를 향유한 상황에 대한 신용파일을 만들고 상응하는 후속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부칙**  **제23조** 협정과 본 방법 규정이 다른 경우 협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 비주민납세자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체결한 이중과세방지 배정대우를 향유하고자 할 경우, 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제25조** 본 방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세수협정대우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60호 발표,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31호 수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  | **国家税务总局**  **关于发布《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  **管理办法》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5号  为深化“放管服”改革，进一步优化税收营商环境，提高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的便捷性，国家税务总局制定了《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管理办法》，现予发布，自2020年1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附件：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信息报告表  国家税务总局  2019年10月14日  **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执行中华人民共和国政府签署的避免双重征税协定（以下简称“税收协定”）和国际运输协定税收条款，规范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以下简称“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以下简称“税收征管法”）及其实施细则（以下统称“国内税收法律规定”）的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国境内发生纳税义务的非居民纳税人需要享受协定待遇的，适用本办法。  **第三条** 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采取“自行判断、申报享受、相关资料留存备查”的方式办理。非居民纳税人自行判断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的，可在纳税申报时，或通过扣缴义务人在扣缴申报时，自行享受协定待遇，同时按照本办法的规定归集和留存相关资料备查，并接受税务机关后续管理。  **第四条** 本办法所称非居民纳税人，是指按照税收协定居民条款规定应为缔约对方税收居民的纳税人。  本办法所称协定包括税收协定和国际运输协定。国际运输协定包括中华人民共和国政府签署的航空协定、海运协定、道路运输协定、汽车运输协定、互免国际运输收入税收协议或换函以及其他关于国际运输的协定。  本办法所称协定待遇，是指按照协定可以减轻或者免除按照国内税收法律规定应当履行的企业所得税、个人所得税纳税义务。  本办法所称扣缴义务人，是指按国内税收法律规定，对非居民纳税人来源于中国境内的所得负有扣缴税款义务的单位或个人，包括法定扣缴义务人和企业所得税法规定的指定扣缴义务人。  本办法所称主管税务机关，是指按国内税收法律规定，对非居民纳税人在中国的纳税义务负有征管职责的税务机关。  **第二章 协定适用和纳税申报**  **第五条** 非居民纳税人自行申报的，自行判断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且需要享受协定待遇，应在申报时报送《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信息报告表》（见附件），并按照本办法第七条的规定归集和留存相关资料备查。  **第六条** 在源泉扣缴和指定扣缴情况下，非居民纳税人自行判断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且需要享受协定待遇的，应当如实填写《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信息报告表》，主动提交给扣缴义务人，并按照本办法第七条的规定归集和留存相关资料备查。  扣缴义务人收到《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信息报告表》后，确认非居民纳税人填报信息完整的，依国内税收法律规定和协定规定扣缴，并如实将《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信息报告表》作为扣缴申报的附表报送主管税务机关。  非居民纳税人未主动提交《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信息报告表》给扣缴义务人或填报信息不完整的，扣缴义务人依国内税收法律规定扣缴。  **第七条** 本办法所称留存备查资料包括：  （一）由协定缔约对方税务主管当局开具的证明非居民纳税人取得所得的当年度或上一年度税收居民身份的税收居民身份证明；享受税收协定国际运输条款或国际运输协定待遇的，可用能够证明符合协定规定身份的证明代替税收居民身份证明；  （二）与取得相关所得有关的合同、协议、董事会或股东会决议、支付凭证等权属证明资料；  （三）享受股息、利息、特许权使用费条款协定待遇的，应留存证明“受益所有人”身份的相关资料；  （四）非居民纳税人认为能够证明其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的其他资料。  **第八条** 非居民纳税人对《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信息报告表》填报信息和留存备查资料的真实性、准确性、合法性承担法律责任。  **第九条** 非居民纳税人发现不应享受而享受了协定待遇，并少缴或未缴税款的，应当主动向主管税务机关申报补税。  **第十条** 非居民纳税人可享受但未享受协定待遇而多缴税款的，可在税收征管法规定期限内自行或通过扣缴义务人向主管税务机关要求退还多缴税款，同时提交本办法第七条规定的资料。  主管税务机关应当自接到非居民纳税人或扣缴义务人退还多缴税款申请之日起30日内查实，对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的多缴税款办理退还手续。  **第十一条** 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留存备查资料应按照税收征管法及其实施细则规定的期限保存。  **第三章 税务机关后续管理**  **第十二条** 各级税务机关应当对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开展后续管理，准确执行协定，防范协定滥用和逃避税风险。  **第十三条** 主管税务机关在后续管理时，可要求非居民纳税人限期提供留存备查资料。  主管税务机关在后续管理或税款退还查实工作过程中，发现依据本办法第七条规定的资料不足以证明非居民纳税人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或非居民纳税人存在逃避税嫌疑的，可要求非居民纳税人或扣缴义务人限期提供相关资料并配合调查。  **第十四条** 本办法规定的资料原件为外文文本的，按照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时，应当附送中文译本，并对中文译本的准确性和完整性负责。  非居民纳税人、扣缴义务人可以向主管税务机关提供资料复印件，但是应当在复印件上标注原件存放处，加盖报告责任人印章或签章。主管税务机关要求报验原件的，应报验原件。  **第十五条** 非居民纳税人、扣缴义务人应配合主管税务机关进行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的后续管理与调查。非居民纳税人、扣缴义务人均未按照税务机关要求提供相关资料，或逃避、拒绝、阻挠税务机关进行后续调查，主管税务机关无法查实其是否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的，应视为不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  **第十六条** 非居民纳税人不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而享受了协定待遇且未缴或少缴税款的，除因扣缴义务人未按本办法第六条规定扣缴申报外，视为非居民纳税人未按照规定申报缴纳税款，主管税务机关依法追缴税款并追究非居民纳税人延迟纳税责任。在扣缴情况下，税款延迟缴纳期限自扣缴申报享受协定待遇之日起计算。  **第十七条** 扣缴义务人未按本办法第六条规定扣缴申报，或者未按本办法第十三条规定提供相关资料，发生不符合享受协定待遇条件的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且未缴或少缴税款情形的，主管税务机关依据有关规定追究扣缴义务人责任，并责令非居民纳税人限期缴纳税款。  **第十八条** 依据企业所得税法第三十九条规定，非居民纳税人未依法缴纳税款的，主管税务机关可以从该非居民纳税人在中国境内其他收入项目的支付人应付的款项中，追缴该非居民纳税人的应纳税款。  **第十九条** 主管税务机关在后续管理或税款退还查实工作过程中，发现不能准确判定非居民纳税人是否可以享受协定待遇的，应当向上级税务机关报告；需要启动相互协商或情报交换程序的，按有关规定启动相应程序。  **第二十条** 本办法第十条所述查实时间不包括非居民纳税人或扣缴义务人补充提供资料、个案请示、相互协商、情报交换的时间。税务机关因上述原因延长查实时间的，应书面通知退税申请人相关决定及理由。  **第二十一条** 主管税务机关在后续管理过程中，发现需要适用税收协定主要目的测试条款或国内税收法律规定中的一般反避税规则的，适用一般反避税相关规定。  **第二十二条** 主管税务机关应当对非居民纳税人不当享受协定待遇情况建立信用档案，并采取相应后续管理措施。  **第四章 附 则**  **第二十三条** 协定与本办法规定不同的，按协定执行。  **第二十四条** 非居民纳税人需要享受内地与香港、澳门特别行政区签署的避免双重征税安排待遇的，按照本公告执行。  **第二十五条** 本办法自2020年1月1日起施行。《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管理办法》（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60号发布，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31号修改）同时废止。 |